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가합56453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B

2. C

3. 주식회사 D

변론 종결2016. 5. 19.

판결 선고2016. 6.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491,008,018원 및 그 중 254,555,460원에 대하여는 2015. 9. 14.부터, 235,722,849원에 대하여는 2015. 9. 15.부터, 각 2016. 2. 6.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B,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주문 제2항의 '2016. 2. 6.'은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임).

이 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A의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피고 C의 연대보증

○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는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신한은행	일반자금대출	300,000,000	2012. 5. 11.	270,000,000
2	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260,000,000	2014. 4. 17.	234,000,000

○ 위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A는 원고가 A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당시 적용 이율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등

○ A가 2015. 7. 1. 위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아래 표 내역과 같이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신한은행	2015. 9. 14.	253,362,724	2,439,026	255,801,750
기업은행	2015. 9. 15.	234,000,000	1,722,849	235,722,849
	491,524,599			

○ 원고는 2015. 9. 15. A로부터 1,246,290원을 회수하여 이를 신한은행에 관한 구상금채권에

충당하였다. 또한 위 보증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확정손해금 819원, 미수위약금 728,890원이 발생하였다.

다. A에 대한 파산선고

○ A는 2015.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하여 2015. 9. 14. 위 법원 2015하합10013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변호사 B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A의 파산관재인 B을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파산관재인 사이 : 다툼 없음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D 사이 :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424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은 A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파산채권자인 원고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권의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으로서 이 사건 청구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491,008,018원[= 490,278,309원(= 491,524,599원 - 1,246,290원) + 819원(확정손해금) + 728,890원(미수위약금)] 및 그 중 신한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에서 일부 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잔액 254,555,460원(= 255,801,750원 - 1,246,290)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5. 9. 14.부터, 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235,722,849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5. 9.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2. 6.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은 A가 자신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그 설립은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D은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피고 D의 사내이사 E가 2008. 3. 1.부터 A에 근무해왔다.
- ㉡ 피고 D의 사내이사 E, 감사 F는 A의 대표이사인 피고 C과 특수신분관계(고등학교 동기동창생들)에 있다.
- ㉢ 피고 D의 설립당시 본점 소재지가 A와 동일한 장소였다.
- ㉣ 피고 D의 직원은 모두 A의 직원들이었다.
- ㉤ 피고 D은 A로부터 전기공사업, 전문감리업 부분의 영업을 분할하여 합병한 회사로서 A와 물적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A에 분할합병의 대금을 지급한 바도 없다.

나. 판단

-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중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 2) 그러나, 원고가 'A가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피고 D을 설립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위 가.항의 각 사유 중 먼저 ㉠ 내지 ㉣의 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사유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 피고 D이 설립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3) 다음으로 위 가.항의 ㉔의 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8, 9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는 2015. 2. 27. 그 영업의 일부인 전기공사업, 전문감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 D에게 분할합병하였고, A와 피고 D은 2015. 4. 22. 위 분할합병사실을 각 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와 같은 영업 일부의 분할합병 사실로도 역시 피고 D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채무면탈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1)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오히려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은 A와 주주의 구성이 다른 사실, 피고 D은 위 분할합병 무렵인 2015. 4. 30. A에게 분할합병 대금으로 1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D의 사내이사 E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2735호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위 법원은 2015. 12. 22. 위 분할합병의 절차에 있어 상법이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D이 2015. 4. 22. A의 영업 일부를 분할하여 흡수한 합병을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2월경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4)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전제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현룡

판사김효진

판사강성훈

1)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면, 피고 D은 위 분할합병에 의해 분할합병 전의 A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즉, 분할합병은 채무면탈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방법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기한 연대채무의 이행을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도중 A와 피고 D의 위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본문에서 후술)이 선고되고 확정됨에 따라 2016. 5. 19.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의 진술로써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기한 위 선택적 청구를 철회하였다.